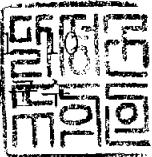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756
번 호	

제출일자 : 201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균등지급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, 시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우리 군 조례인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참전명예수당 증액 및 단서조항 신설

- 참전명예수당 : 2만원 ⇒ 3만원
- 단서조항 :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

나. 사망위로금 증액 : 15만원 ⇒ 30만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입법예고 : 2011. 8. 22. ~ 9. 14. - 특기할 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월 20천원의 참전명예수당”을 “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

제3조제2호 중 “사망위로금 150천원”을 “사망위로금 3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사업)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참전유공자에게 월 20천원의 참전명예 수당 지급 <단서 신설> 2.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150천원 지급 	<p>제3조(지원사업)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1. _____ 월3만원의 참전명예 수당 지급 단,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수령 시 미지급</p> <p>2. _____ 사망 위로금 30만원 _____</p>

관계 법령

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3조(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1.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· 제6호 ·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
3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

제5조(참전명예수당 등)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수당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.
-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